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7 선고 2023가단126260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535,866원 및 그중,
가. 181,285,501원에 대하여는 2023. 4. 15.부터 2023. 4. 27.까지 연 10.9%의,
나. 171,619,604원에 대하여는 2023. 4. 15.부터 2023. 4. 27.까지 연 10.5%의, 각 2023.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본문, 제1항 본문)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2023. 4. 2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진술간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김양호

청 구 원 인

1. 당사자관계

채권자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득하여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C는 채권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채무자는 위 계약에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2. 소외 주식회사 C는 채권자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2항의 2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채무자는 이 대출계약에 모두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아 래 -

대 출 일: 2022년 01월 07일

대출원금: 금 238,700,000원

이 자 율: 연 7.9%

연체이자율: 연 10.9%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상환기간: 48개월

대 출 일: 2021년 11월 19일

대출원금: 금 238,700,000 원

이 자 율: 연 7.5%

연체이자율: 연 10.5%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상환기간: 48개월

3. 기한이익의 상실

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단 분할상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때로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참조)

나, 위 계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C는 계약성립 즉시 채권자로부터 대출금을 각 수령하였으나 원리금의 상환이 각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바, 아래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 할 의무가 있으며, 채무자는 소외 주식회사 C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각 의무를 부담합니다.

4. 채권내역 (기준일 2023년 04월 14일)

2022년 01월 07일자 대여금

미회수 원금 (A)	181,285,501 원
이자/연체이자(B)	2,437,638 원
가지급 비용(독촉절차 비용 제외)(C)	0 원
총계 (A+B+C)	183,723,139 원

2021년 11월 19일자 대여금

미회수 원금 (A)	171,619,604 원
이자/연체이자(B)	2,193,123 원
가지급 비용(독촉,절차 비용 제외)(C)	0 원
총계 (A+B+C)	173,812,727 원

5. 결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7,535,866 원 및 이 금원 중 금 181,285,501 원에 대하여 2023년 04월 15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 10.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금 171,619,604 원에 대하여 2023년 04월 15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 10.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합계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부득이 본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6. 회사의 지정 소재지 법원의 관할권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나, 지점의 경우도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회사이고 계약자체가 지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의무이행지를 지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467조 2항 단서) 채권자의 지정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무이행지 관할(민사소송법 8조)).

11월 11일

11월 11일

끝.

